

의안번호	2216497
의 퇴 인	박홍배의원
회 답 일	2026.2.24.
추계번호	26B058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음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정보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4.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의무규정
3	안 제25조의2(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신설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실시시간으로 점검하고 거짓 광고가 발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제1항)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로 봄(제2항)</u>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5.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의무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34조의3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41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41조의4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5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1. <u>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광고 점검 및 조치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u>	의무규정

5.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과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5조의2(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거짓 광고가 발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 미대상 –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사실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6	안 제41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7	안 제41조의4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신설		
8	안 제50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로 인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²⁾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정보 통신을 명시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포함하려는 내용 등임

- (안 제41조의3)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규모와 이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2)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안 제41조의4)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광고 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거짓 광고 점검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정 규모와 이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나, 영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사업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지원내용 및 수준 등을 추정하여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